

훈련운영기준

(Training Specification)



세한대학교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Sehan University Aviation Technical Training Center)



개정기록부(Revision Status)

개정번호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신규	2020.12.21	신규 제정	
23-1	2023.04.07.	책임관리자 변경	
24-1	2024.01.12.	<p>현행 『항공안전법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12의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에 따라 부분 개정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001 : 지정 취소 규정 내용 추가, 표준절차서 적용 2. A002 : 용어의 정의추가(비행기 과정, 헬리콥터 과정, 항공전자.전기.계기과정) 3. A004 : “특별허가 및 제한사항” 항의 내용 추가 -항공정비사(비행기)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인가(2020년) 관련 인가 사항 명시 4. A006 : 전문교육기관(항공기술교육원) 조직 구체화 5. A009 : 전문교육기관 인가 정원 표기방법 변경 6. A012 : 실기시험관의 겸직 관련 내용 추가 7. A013 : 표준절차서 적용, 교관 평가 관련 내용 수정 8. A025 : 표준절차서 적용, 기록물 보관 관련 내용 수정 9. A026 : 표준절차서 적용, “교육훈련체계 등록”항 추가 10. B001 : 실기 교육 방법 및 다른 항공정비사 교육 과정 이수 시 적용 절차 수정 11. E001 : 표준절차서 적용, “품질보증시스템” 항의 내용 수정 	
24-2	2024.8.19	책임관리자 변경	



목 차(Table)

번호	제 목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A001	발행 및 적용	2020.12.21	2024.01.12	24-1
A002	정의 및 약어	2020.12.21	2024.01.12	24-1
A003	지정된 훈련용 항공기	-	-	(예비)
A004	특별허가 및 제한사항	2020.12.21	2024.01.12	24-1
A005	면책 및 예외	-	-	(예비)
A006	설치자	2020.12.21	2024.01.12	24-1
A007	책임관리자 및 훈련운영기준 서명권자	2020.12.21	2024.8.19	24-2
A008	분교(분원)	-	-	(예비)
A009	정원인가	2020.12.21	2024.01.12	24-1
A010	보증보험 가입 및 교육비 반환	2020.12.21	2024.01.12	24-1
A012	실기시험관	2020.12.21	2024.01.12	24-1
A013	교관 및 평가	2020.12.21	2024.01.12	24-1
A025	지정된 기록관리 시스템	2020.12.21	2024.01.12	24-1
A026	교육훈련체계등록	2022.02.25.	2024.01.12	24-1
B001	전문교육과정	2020.12.21	2024.01.12	24-1
B002	특별교육과정	-	-	(예비)
B003	기타교육과정	-	-	(예비)
B004	훈련계약 인정 및 제한사항	-	-	(예비)
D001	항공기 정비 방법	-	-	(예비)
E001	품질보증시스템	2020.12.21	2024.01.12	24-1



A001. 발행 및 적용

a. 이 훈련운영기준은 다음의 장소에 위치한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 교부한다.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우편번호 31746)

연락처 :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041-359-6164	041-359-6069	@sehan.ac.kr

b. 이 훈련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2020-ATO-28)와 함께 교부한다.

c.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설치자 세한대학교 총장은 항공안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교육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d.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이하 "책임관리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훈련 및 평가를 담당한다.

e. 책임관리자는 훈련생 등의 훈련 및 평가를 위하여 지정서에 기재된 훈련기관명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f. 이 훈련운영기준은 아래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유효하며 휴장,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계속 유효하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병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02. 정의 및 약어

이 훈련운영기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정의 및 약어는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 훈련운영기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란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훈련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제반 기준의 이행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b. "전문교육기관(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c. "훈련생(Trainee)"이라 함은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 d.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이라 함은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세부사항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조직, 훈련, 시험, 평가에 대한 제한 사항과 훈련과정의 운영 등이 수록된 서류를 말한다.
- e. "훈련시간(Training Time)"이라 함은 훈련생이 지정된 교관으로부터 받은 학과 또는 실기 훈련 시간을 말한다.
- f. "분교(Satellite Training Center)"란 주 전문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분교는 주 전문교육기관의 기능적 관리 하에 상시적으로(permanent in nature)운영되며 분교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주 전문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다.
- g. "전문교육과정(Approved Training Course)"이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소지자가 훈련, 시험, 또는 평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말한다.
- h. "특별교육과정(Speciality Training Course)"이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소지자가 특정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 i. "기타교육과정(Other Course)"이란 승인교육과정이나 특별교육과정 이외의 기타훈련과정을 말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2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 j. "주임교관(Head Instruc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학과 및 실기 교육에 대해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자로 교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 k. "실기교관(Practical Instruc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실기,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교관을 말한다.
- l. "학과교관(Department Instruc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 중 학과, 이론교육을 전담하는 교관을 말한다.
- m. "실기시험관(Practical Examiner) 또는 실기평가관(Practical Evalua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 n. "비행기과정" 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제9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승인받은 고정익 항공기 정비사 과정을 말한다.
- o. "헬리콥터과정" 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제9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승인받은 헬리콥터 항공기 정비사 과정을 말한다.
- p. "항공전자·전기·계기과정" 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제9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승인된 항공기 전자계통, 전기계통 및 계기계통 심화과정을 말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3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04. 특별허가 및 제한사항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소지한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항공정비사 양성교육 및 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

a.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소지한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게 승인된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명	입과 대상	관련규정	인가사항
항공정비사(비행기)	항공정비사과정 교육희망자	항공안전법 제48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2항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b.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이 항에 의한 교과과정을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과정별 훈련프로그램을 인가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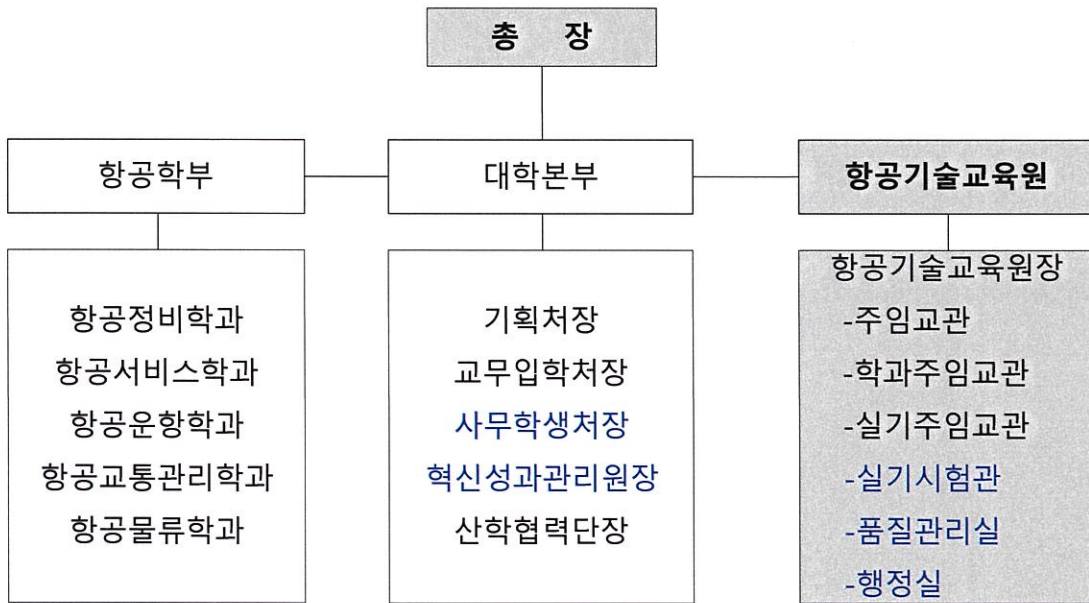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06. 설치자

a.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음 표와 같다.

직 위	성 명	전 화	팩 스
세한대학교 총장	이 승 훈	041-359-6000	041-359-6100

b. 전문교육기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세한대학교 조직도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7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07. 책임관리자 및 훈련운영기준 서명권자

a.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의 책임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 이 성 종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우편번호 31746)
직위 :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
전화 : 041-359-6166

b. 훈련운영기준을 수령하여 변경 신청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승인부분
항공기술교육원장	이 성 종	전 체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황재갑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8.19

Effective Date : AUG. 19. 2024

제정일: 2020. 12. 21.

- 8 -

개정일자/번호: 2024.8.19./24-2

A009. 정원인가

a. 전문교육기관 입과 정원 : 총 180명

과 정	정원(年)
항공정비사(비행기)	연 60명
	연 60명 x 3개 학년 = 연간 총 180명

b. 특별과정 입과 정원
- 해당사항 없음

c. 기타과정 입과 정원
- 해당사항 없음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0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10. 보증보험 가입 및 교육비 반환

- a. 항공기술교육원은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기관으로서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음
- b. 학부과정 훈련비 보장의 책임은 학교재단에 있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1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12. 실기시험관

- a. 책임관리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각 교육과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실기시험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b. 평가에 대한 판정은 평가판정 기준에 의거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 충족 시 합격으로 판정하고 기준 미달 시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c. 실기시험관은 불합격 판정받은 훈련생에 대해 2차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과정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d. 실기시험관은 심사 종료 후 추가 훈련 등의 조건으로, 기준에 미달된 자를 합격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e. 책임관리자는 평가임무를 수행하는 실기시험관의 명부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기시험관의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www.kaa.atims.kr) 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 f. 책임관리자는 실기시험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 1년 마다 평가관 또는 실기시험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g. 필요 시 실기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기시험관을 겸직 할 수 없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2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13. 교관 및 평가

- a. 책임관리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각 과정별 교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b. 책임관리자는 학과·실기 교관의 명부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신의 명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관의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동된 명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c. 책임관리자는 소속 학과교관의 자격 유지와 교육훈련 품질제고를 위하여 매 1년마다 소속 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d. 책임관리자는 교관의 교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매 학기 시작전 소속 교관에 대하여 교수계획서, 강의교안 등 교육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교관에 대해서는 교관 교육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3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25. 지정된 기록관리 시스템

- a. 책임관리자는 이 항에서 정한 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의 교육생 기록을 개인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생 성명
 2. 교육 과정명
 3. 교육성과와 담당교관의 성명
 4. 시험 또는 평가결과 및 담당 평가관의 서명
 5.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추가 이수교육 및 평가 결과
- b. 책임관리자는 제 a항에서 정한 기록들을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c. 책임관리자는 이 훈련운영기준에 의거 지정된 과정에 임명된 교관 및 실기시험관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전문교육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 및 퇴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d. 책임관리자는 교육생 요구 시 훈련기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e. 책임관리자는 교육생의 기록을 아래의 장소에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 f. 책임관리자는 교관 및 평가관 자격 및 훈련요건의 이행상태에 관한 기록을 아래 장소에 보관한다.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 g. 책임관리자는 모든 기록물을 침수나 화재 방지설비 등 재난대비 설비가 갖추어진 지상 건물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사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 두어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5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A026. 교육훈련체계 등록

- a. 책임관리자는 항공안전법 제48조제10항에 같은법 제104조 제10항에 따라 다음사항을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http://www.kaa.atims.kr>) 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관리 페이지 입력항목
 2. 설치자 및 책임관리자
 3. 학과주임교관, 실기주임교관, 실기시험관 및 행정책임자
 4.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
 5. 현행 훈련운영기준, 교육규정 및 SMS 메뉴얼
 6.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7. 역량기반훈련프로그램(Competency Based Training Program)
 8. 기타 훈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b. 책임관리자는 상기내용에 대하여 변경된 이후 15일 이내에 등재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병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6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B001. 전문교육과정

- a.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소지한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본 기준 A004. 특별허가 및 제한 사항에서 승인된 교육과정의 각 과정별 과목, 교육시간을 다음의 기준으로 운영 한다.
- b. 항공정비사(비행기) 과정
 -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2,41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나, 조정 된 내용을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 한다.

과목	교육 내용 [국토교통부 표준]	비행기 과정		
		학과 시간	실기 시간	계
항공법규	국제항공법(ICAOW IATA에 관한 내용 포함)	45	-	45
	국내항공법(사고조사 및 항공보안 포함)			
	항공정비관리(정비관련 규정, 도서, 정비조직, 정비프로그램, 정비방식 및 양식기록에 관한 내용 포함)	45	-	45
	중간시험(2회 이상)	5	-	5
	소계	95	-	95
정비일반	수학 · 물리	30	-	30
	항공역학	45	-	45
	항공기 도면	20	25	45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10	20	30
	항공기 재료, 공정, 하드웨어	20	25	45
	항공기 세척 및 부식방지	15	15	30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17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정비일반	유체 라인 및 피팅	10	35	45
	일반공구와 측정공구	10	20	30
	안전 및 지상취급과 서비스작업	20	10	30
	검사원리 및 기법	30	15	45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	45	-	45
	중간시험(2회 이상)	10	-	10
	소계	265	165	430
항공기체	항공기 구조	30	30	60
	항공기 천, 외피, 목재와 구조물 수리	20	10	30
	항공기 금속구조 수리	30	60	90
	항공기 용접	20	40	60
	첨단 복합 소재	25	50	75
	항공기 도색 및 마무리	10	20	30
	항공기 유압계통	30	30	60
	항공기 착륙장치 계통	30	30	60
	항공기 연료계통	30	30	60
	화재방지, 제빙(De-icing)·방빙(Anti-icing) 및 빗물 제어(Rain Control)	15	15	30
	객실공조 및 공기압력 제어계통	20	25	45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	20	25	45
	중간시험(2회 이상)	15	-	15
	소계	295	365	660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제정일: 2020. 12. 21.

- 18 -

개정일자/번호: 2020.12.21./New

전자·전기·계기(기본)	기초전기·전자	120	75	195
	항공기 전기계통	60	30	90
	항공기 계기계통	60	30	90
	항공기 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치	120	60	180
	중간시험(2회 이상)	5	10	15
	소계	365	205	570
최종 시험	종합평가 시험	5	10	15
계		1,310	1,100	2,410

- c. 다른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동일한 교육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과정에서 추가되는 교육 내용 및 시간을 이수하면 해당 과정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
- d. 책임관리자가 상기 내용을 적용하려면 교육규정에 교육과목 및 내용에 대하여 선수과정 과목 및 내용을 명시하고 추가 과목 및 내용을 표시하여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해야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20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

E001. 품질보증시스템

- a. 책임관리자는 학과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수기법에 대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발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b. 책임관리자는 품질보증시스템을 통하여 항공안전관련법, 훈련운영기준 및 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c. 책임관리자는 학과교관 및 실기시험관이 이 훈련운영기준으로 지정된 학과교육, 시험, 평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d. 책임관리자는 정비실기 교관을 대상으로 표준절차의 준수, 교육의 품질, 브리핑/디브리핑 기술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교관품질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한다.
- e. 책임관리자는 과정 완료 후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훈련생의 이해 및 역량 향상, 훈련과목의 적정성, 평가의 적합성, 교관의 교수능력, 성적의 분포 등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을 측정 및 평가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며 차기 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민 병 우 (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운항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4.01.12

Effective Date : JAN.12. 2024

제정일: 2020. 12. 21.

- 25 -

개정일자/번호: 2024.01.12/24-1